

# 감사보고서

광진구체육회 정관 제47조에 따라 2022년 2월 3일 목요일 10시부터 실시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체육회 운영에 대한 행정감사 및 결산서 등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합니다.

## 1. 행정감사 보고

2021년도는 광진구체육회가 특수법인으로 설립되고 사무국 직원들이 정규직 전환되는 등 사무국이 안정화되고 행정적으로 체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.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진행한 백신 접종 캠페인과 체육시설 점검, 그리고 회원종목단체를 위한 방역물품 배부 등 방역단계대응에 상당히 긍정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되어 집니다.

2021년도 상반기 체육회는 코로나19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반면 하반기에는 방역단계를 준수하여 비대면 단풍길 걷기, 대면 가을길 걷기대회, 유공자 시상식 등 움추려 들었던 광진 구민과 동호인 체육 활성화에 기여를 하였습니다.

또한 코로나 방역단계에 따른 짧은 기간의 체육시설 사용이지만 동호인들에게 지급되는 공공 시설사용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.

## 2. 회계감사 보고

감사결과 광진구체육회의 2021년도 수입지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관련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이하 내용은 감사과정에서 발견된 사항입니다.

비인기종목 활성화사업은 2021년도에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광진구체육회는 택견, 윈드서핑과 바둑 세 종목에 대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.

이 과정에서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등에 대해 이를 적절하게 납부하지 않았습니다.

이에 대한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종목	지급월	인원	강사료	원천세	납부일
택견	12월	1명	2,000,000	176,000	12/20
바둑	12월	3명	3,600,000	316,800	-
윈드서핑	11, 12월	2명	1,600,000	140,800	-

바둑과 윈드서핑은 현재까지 원천세 각 316,800원과 140,800원을 납부하지 않았고, 택견은 소득세 160,000원과 지방소득세 16,000원을 각각 국세청과 광진구에 납부하여야 하나 176,000원을 모두 국세청에 납부하였습니다.

이 사업은 보조금사업으로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라도 그 상당액이 사업수행자의 소유는 아닌 바, 위 건에 대해 즉시 원천세를 신고납부 하시기를 바랍니다.

그리고 이후로도 해당 사업처럼 구체육회가 아닌 종목별 협회 등에서 집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광진구체육회는 이에 대하여 잘 지도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2월 3일

광진구체육회 행정감사 장 기 설



광진구체육회 회계감사 김 영 규

